

2019년도 산림경영지도원 임용전형 공고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우수한 인재 모집을 위한 『2019년도 산림경영지도원 임용전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9일

산림조합중앙회장 직인생략

1 채용인원

1) 채용인원은 지역별(도별)로 선발

채용직무	채용 직급	선발예정인원(명)										비고
		합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산림경영지도원	8급	71	5	5	9	5	9	11	15	9	3	

※ 초임호봉은 산림조합 인사규정에 따름

2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기준)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산업기사·산림기능사·임업종묘기능사·목재가공기능사·펄프제지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나. 고등학교의 임업 또는 조경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별표 4의2) 산림분야 산업기사 응시자격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①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의 임업기술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②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림사업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라.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의 임업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림사업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공통사항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나. 산림조합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및 제20조(정년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명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부패행위 등으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7.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9. 본회 및 회원조합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취소된 사람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인사규정 제20조(정년퇴직)

-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 ② 직원의 정년퇴직 기준일은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로,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
- ③ 직원의 정년대기는 정년퇴직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전 6개월 이내에 발령한다. 다만, 인사운용상 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년퇴직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기발령 할 수 있다.

3 전 형 방 법

1) 서류심사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 접수 완료한 사람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경우 필기시험 응시가능

2) 필기시험

가. 시험과목 : 5과목(필수 4과목, 선택 1과목)

－ 필수과목(4과목) : 조림, 산림보호, 산림경영, 산림관계법규

※ 산림관계법규 범위(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조합법

－ 선택과목(1과목) : 산림토목(임도, 사방, 임업기계), 임산가공 중 택일

나. 배점 및 문항 : 과목별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항 / 사지선다형

다. 시험시간 : 150분 / 1교시

라. 합격자 결정 :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전 과목 총 만점의 60%이상 득점자 중 응시 지역별(도별) 최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전 과목 총 만점의 60%이상 득점자 중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필기시험 합격자로 함

3) 면접시험

가. 대 상 자 : 필기시험 합격자(지역별 선발예정인원의 130% 이내)

나. 면접시험 평정요소

－ 산림경영지도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4) 최종합격자 결정

- 가.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 최고 득점자 순으로 결정
- 나. 면접시험 결과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 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사람 중에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였거나 전형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함

4 전 형 일 정 및 장 소

1) 필기시험

- 가. 일 시 : 2019. 11. 9.(토), 09:00 ~ 11:30
 - ※ 응시자는 시험일 당일 오전 8시 30분까지 해당고사장 입실하여야 하며 시험당일 오전 8시 50분 정문폐쇄(이후 출입자는 필기시험 응시불가)
 - ※ 응시자 준비물 : 답안 작성용 흑색 컴퓨터용 사인펜, 신분증, 수험표
- 나. 장 소 : 가락중학교(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45)
- 다. 합격자 발표 : 2019. 11. 11.(월), 17:00
- 라. 합격자 발표 장소 :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http://www.nfcf.or.kr>)
자격전형사이트(<http://recruit.incruit.com/nfcf>)
 - ※ 자격전형사이트의 경우 원수접수기간 전 접속불가

2) 면접시험

- 가. 일 시 : 2019. 11. 13.(수), 9:30 ~ 2019. 11. 14.(목), 17:00
 - ※ 필기시험 합격인원에 따라 면접일시는 조정될 수 있으며 면접일시 조정 시 별도공지
- 나. 장 소 : 산림조합중앙회 11층 회의실
 - ※ 면접시험의 대상자, 일시,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함

3) 최종합격자 발표

- 가. 일 시 : 2019. 11. 19.(화), 10:00
- 나. 장 소 :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 및 자격전형사이트

4) 임용후보자 등록

가. 등록기간 : 2019. 11. 19. ~ 2019. 11. 27. / 토·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산림조합중앙회 지역별(도별) 지역본부 및 자격전형사이트

5) 합격의 효력

가. 최종합격자(임용후보자)가 등록기한내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합격의 효력 상실

나. 임용후보 등록 후 임용후보자 교육 미이수 시 합격의 효력 상실

※ 최종합격자는 **임용된 지역에서 3년간 전보를 제한**

5 필 기 시험 가 산 특 전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자는 과목마다 만점(100점)에 해당 비율을 가산(단, 각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에 한함)

비율	자 격 증(국가기술자격증)	비 고
5%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 식물보호기사, 임산가공기사, 임업종묘기사, 조경기사	1개의 자격증만 인정
3%	산림산업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조경산업기사	
2%	산림기능사, 조경기능사	

나.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가구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과목마다 만점(100점)에 5%를 가산(단, 각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에 한함)

비율	자 격	비 고
5%	만 20세 미만의 자녀 3인 이상을 부양하는 자	1개의 해당사항만 인정
	만 20세 미만의 형제·자매가 2인 이상인 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목마다 만점(100점)에 해당비율(10% 또는 5%) 가산(단, 각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에 한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나.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다.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 나.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6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1) 원서접수 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가. 원서접수 사이트 : (<http://recruit.incruit.com/nfcf>)

※ 원서접수 기간 전 접속 불가

나. 접수기간 : 2019. 10.21(월), 09:00 ~ 2019. 10.25(금), 15:00

2) 응시수수료 : 무료

3) 유의사항

가. 수험표는 원서접수 완료 후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본인이 직접 출력하여야 함

나.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인터넷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원서접수 완료 요망

다. 응시원서 접수시 최근 증명사진, 응시자격(이수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및 가산특전 등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첨부

7

기 타 유 의 사 항

- 가. 각 단계별 합격자, 시험장소, 일정 및 최종합격자는 인터넷채용사이트 (<http://recruit.incruit.com/nfcf>)에 공고합니다.
- 나.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시험일정 공고사이트에 공고합니다.
-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마.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바. 기타 시험과 관련한 사항은 인터넷 채용시스템(<http://recruit.incruit.com/nfcf>)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채용시스템 내 “채용 Q&A”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지역별(도별) 산림조합 현황

<참고자료> 지역별(도별) 산림조합 현황

지역별 산림조합 현황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양주지역	춘천시	청주	대전광역시	완주군
여주시	홍천군	보은군	세종특별자치시	진안군
평택시	횡성군	옥천군	천안시	무주군
화성수원오산	원주시	영동군	공주시	장수군
시흥지역	영월군	진천군	보령시	임실군
파주시	평창군	괴산증평	아산시	남원시
고양시	정선군	음성군	서산시	순창군
광주성남하남	철원군	충주	논산시	정읍시
연천군	화천군	제천	당진시	고창군
포천시	양구군	단양	금산군	부안군
가평군	인제군		부여군	김제시
양평군	고성군		서천군	군산시
이천시	양양속초		청양군	익산시
용인시	강릉시		홍성군	
안성시	삼척동해태백		예산군	
김포시			태안군	
강화군				
옹진부천				
인천				
서울시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광주광역시	대구달성	부산광역시	제주시	
여수시	포항시	울산광역시	서귀포시	
순천시	경주시	창원시		
나주시	김천시	진주시		
광양시	안동시	통영		
담양군	구미시	사천시		
곡성군	영주시	김해시		
구례군	영천시	밀양시		
고흥군	상주시	거제시		
보성군	문경시	양산시		
화순군	경산시	의령군		
장흥군	군위군	함안군		
강진군	의성군	창녕군		
해남군	청송군	고성군		
영암군	영양군	남해군		
무안군	영덕군	하동군		
함평군	청도군	산청군		
영광군	고령군	함양군		
장성군	성주군	거창군		
완도군	칠곡군	합천군		
진도군	예천군			
신안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